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2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8.

발 의 자 : 조승래 · 안도걸 · 이정문
김준혁 · 임미애 · 김영진
이주희 · 김용만 · 장철민
서미화 · 김성희 · 강준현
박용갑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·면·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·기호·소속정당명 등 게시 주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최근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형사사건 관련 의혹 등을 부각하는 내용이 게재되는 사례가 있으나, 현수막만으로는 그 게시 주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때에는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·기호 및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해당 현수막의 게시 주체와 정치적

책임 주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고
하려는 것임(안 제67조제3항 신설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규격”을 “규격, 표시방법”으로 한다.

- ③ 제1항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때에는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·기호 및 소속 정당명(무소속후보자는 “무소속”이라 한다)을 표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7조(현수막) ① ·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③ 제1항의 현수막의 <u>규격</u>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67조(현수막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1항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때에는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·기호 및 소속 정당명(무소속후보자는 “무소속”이라 한다)을 표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-----<u>규격, 표시 방법</u>----- ----- -----.</p>